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자료 제공

1. 의결주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유망수출산업인 화장품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장품류 제품에 대해 한시적 포장규제 완화

3. 주요내용

가. 종합제품 내 화장품류 제품 항목 삭제(안 시행령 제7조제2호사목)

화장품류 제품의 단위제품과 종합제품의 구분을 없애고, 모든 화장품류 제품에 대해 단위제품의 포장공 간비율 적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사목 후단 중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 잡화류"를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세제류, 신변잡화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장품류 제품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령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제7조제2호사목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ᠺ 🗟

신 · 구조문 대비

현 행	개 정 안
제7조(포장의 재질 ·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7조(포장의 재질·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 켜야 하는 제품	2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종합제품(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이 경우 주	사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 도구나 그 구성품, 소량(30그램 또는 30밀리리터 이하)의 샘플용 비매품 · 증정품 및 설명	
서, 규격서, 메모카드와 같은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 변잡화류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세제류, 신변잡화류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KOPA NEW5 신청

(사) 한국포장협회에서는 매월 15일 온라인 뉴스레터 'KOPA NEWS'를 제작, 발송합니다. 신청은 이메일로 해주시면 됩니다.

> 편집실: (02)2026-8655 E-mail: kopac@chollian.net